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중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31
----------	-----

발의년월일 : 2019년 4월 25일
발 의 자 : 오중석 의원 (1명)
찬 성 자 : 정지권, 송도호, 우형찬, 이승미,
정진철, 추승우, 김태호, 송아량,
성중기, 황인구, 한기영, 송정빈,
전석기, 문병훈, 김화숙, 김수규,
김제리 의원 (17명)

1. 제안이유

-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산불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산불 대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과 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라. 산불방지 활동의 개발과 보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

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시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③ 시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내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산불방지협의회(이하 “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 관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시 내의 산불유관기관 과장급 공무원

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산불방지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산불방지협의회는 위원장은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1. 산불방지 활동의 계획과 목적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산불방지 활동 관련 유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책자,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불방지 지원) ①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